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6일(수) ~ 5월 29일(금)

□ 대상 지역 : 수원시

※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

□ 대상 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지원호수 : 단독주택 28호 지원

(※단, 보조금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 호수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자격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의 단독주택 소유자

○ 공유지분 주택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

○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임차인 협약서 제출(최종 선정 시)

※ 협약내용 :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 기간 보장

□ 지원 금액 : 총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1,2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최대 1,200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

(1순위 중 반지하 단독주택 실거주자 및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 이상 자부담 발생)

□ 지원내용

○ 집수리 공사

공사 항목	공사내용	비고
방수공사	옥상 방수, 화장실 방수, 외벽 방수 등	• 발수제 불가 • 외벽 방수 중 발수제 외 조적벽체 방수용 ‘코팅제’의 지원 여부는 집수리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정함 • 화장실 방수 시 ‘타일철거 및 재시공’의 마감공사 지원 가능 • 기타 다른 부위의 방수공사 지원 여부는 집수리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정함
단열공사	외단열, 내단열 보강	• 내단열 공사가 진행된 공간에 한하여 해당 공간 전체의 벽, 천장의 마감공사(도배, 몰딩 등) 지원 가능 • 단열재의 성능은 공고문 내 자재사용기준에 따름
도장공사	외벽도장, 담장 도장 등 (도장공사 시 균열·보수 포함)	• 도장공사의 색상은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름
창호공사	외기에 면한 창호 및 현관문 교체 (※창호 교체 시, 방충망, 방법창 포함 가능)	• 실내 방문은 지원 불가 • 창호의 성능은 공고문 내 자재사용기준에 따름
금속공사	난간, 옥외계단 등	• 옥외 철제계단은 현장실사를 통해 필요시 지원 가능
난방설비 공사	바닥난방 설비(배관 세관 포함), 보일러 온수 분배기,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 바닥난방 배관 공사 시 해당 공간의 바닥 마감공사(바닥재, 걸레받이) 지원 가능 • 친환경보일러 교체는 생산년도 기준연한 이상 경과된 보일러만 교체 가능 - 기름보일러: 7년 / 가스보일러: 10년 ※ 보일러 교체 전 사진 첨부 필수 ※ 보일러 교체 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필수
기타공사	주택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	• 단, 지원 여부는 집수리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정함

○ 경관개선 공사

공사 항목	공사내용	비고
주차장 조성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 대문의 재질은 공고문 내 자재사용기준에 따름 • 쉼터·화단 조성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한함
담장 개량	담장의 균열 보수, 도장, 철거	
대문 개량	대문 교체, 대문 도장	
쉼터·화단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및 조망이 가능한 곳에 위치한 쉼터 또는 화단 조성	

○ 안전 환경 조성 공사

공사 항목	공사내용	비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차수판), 개폐식 방법창, 빗물유입방지 처마, 수정 펌프 등	• 반지하주택에 한함
안전시설 설치	미끄럼방지 바닥재 및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안전시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만 65세 이상) 거주 주택에 한하여 지원

※ 반지하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방지시설(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법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설치 권장

□ 자재사용기준

공종	최소 자재성능
창호	PVC창호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 제품 사용 - 열관류율 $1.8W/m^2 \cdot K$ 이하 - 기밀성 2등급 이하
	단열방화문 현관문을 단열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경우 - 열관류율 $1.8W/m^2 \cdot K$ 이하 - 기밀성 2등급 이하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에 따름 - 내화성능 내화시간 60분 또는 60분+
단열	내단열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사용 - 두께 30mm 이상 ※ 단, 비확장 발코니는 복합단열재 사용 가능
	외단열 심재준불연 비드법보온판(EPS) 또는 페놀폼(PF)보드 - 두께 50mm 이상 ※ 심재준불연 비드법보온판(EPS)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2층 이하에 시공하는 것을 권장함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담장대문	알루미늄 대문(철재, 스텐, 목재, 알루미늄주물 제외) 사용
옥외난간 (핸드레일)	스테인리스(STS) 재질 사용 - 이 외 금속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분체도장 필수 옥외난간 설치 기준 -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높이 1.2M 이상 -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cm 이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름

□ 지원 조건

- 건축, 소방, 지적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현장점검 시 협조(사전,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 기존 세입자 4년 이상 거주 (협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준공계 제출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 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수원시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수혜자(소유주)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원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위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가구 또는 전자제품 구입,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에서 정한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이중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 주택 기준 준용)
- 2021년 이후,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단독주택
 - 경기도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선유지급여 등
 - 수원시 :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등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미납자의 단독주택
-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불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된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지역
- 주택 이외의 연면적(점포, 소매점 등) 50%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2. 사업절차 및 선정 방법

□ 사업절차



○ 집수리업체(아래 목록 중 선택)

-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회)에서 검증(추천) 받은 24개 시·군 우수 집수리 시공업체
- 수원도시재단 등록업체

※ 업체 목록은 추후 홈페이지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선정 방법

- 배점표(건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기간, 경관개선 등)에 따른 평가 및 사업 선정·심의를 통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은 경우 배점 기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순위	내 용	공사비 지원 (최대 지원금액 내)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전액 지원
	-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소유자가 반지하에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공사비 90% 이내 (자부담 10% 이상 발생)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 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경우 해당,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사진 필수 제출
- ※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시설(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법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설치를 우선적으로 권장

3.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 접수기간 : 2026. 5. 6. (수) ~ 5. 29. (금)
 - 접수시간 :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 문의처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 031-280-6359

붙임1. 절차별 구비서류 목록 1부

붙임2.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배점표 1부

붙임3. 중위소득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 1부

첨부. 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서식(사업신청, 착공, 준공) 1부

1. 신청 서류

<필수 제출>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주택 소유자 거주기간 확인용)
(※초본은 전체 주소 변동 이력이 표시되도록 발급, 개명 했을 경우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표시되게 발급)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해당 시 제출>

- 공동명의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 1·2순위 신청 자격 증빙서류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반지하 실거주 관련 사진, 증빙 가능한 서류 등)
 - 2순위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2. 사업착공 서류

<필수 제출>

-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별지 제6호 서식>
- 집수리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 명의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공사 견적서 및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제출>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 <별지 제8호 서식>

3. 사업준공 서류

<필수 제출>

- 준공계 <별지 제9호 서식>
- 공사 사진 (전·중·후)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별지 제11호 서식>
- 총공사비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중 택1)
- (신청인) 자부담 공사비 입금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 최종 공사견적서 및 세부내역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해당 시 제출>

- (시공업체 발급) 창호공사 시, 창호 제품의 시험성적서 또는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및 자재 납품확인서
- (시공업체 발급) 단열현관문 공사 시, 시험성적서 및 자재 납품확인서
- (공사 중 시공업체 변경 시) 변경된 업체의 공사계약서 사본
- 폐기물처리비 증빙서류

○ 배점 기준

- 아래 배점표의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
- 소유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초본 상 신청 주택 누적 거주기간으로 산정 (*공고일 2026.5.6. 기준)

< 배 점 표 >

영역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기준 (100)	비고
건물 노후도 (50점)	건축년도	45년 이상	50	노후주택 우선 (사용승인일 기준)
		40년 이상 ~ 45년 미만	45	
		35년 이상 ~ 40년 미만	40	
		30년 이상 ~ 35년 미만	35	
		28년 이상 ~ 30년 미만	30	
		26년 이상 ~ 28년 미만	25	
		24년 이상 ~ 26년 미만	20	
		22년 이상 ~ 24년 미만	15	
		20년 이상 ~ 22년 미만	10	
거주 기간 (15점)	소유자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장기 거주 우선 (신청 주택 누적 거주기간)
		7년 이상 ~ 10년 미만	12	
		5년 이상 ~ 7년 미만	10	
		3년 이상 ~ 5년 미만	8	
		3년 미만	5	
공공성 (15점)	경관개선 및 안전 환경 조성 공사	5개 이상	15	경관개선 공사(담장, 대문, 헛터, 주차장 조성 등), 안전 환경 조성 공사(침수방지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4개	12	
		3개	9	
		2개	6	
		1개	3	
사업효과(20점)			20	시군 자체 평가
총점			100	

※ 소액 또는 경미한 공사는 시군에서 전문가 현장평가, 공사내용(금액, 물량) 등을 자체 검토하여 배점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종합점수(1차+2차)가 동점일 경우 주택노후도 > 거주기간 > 공공성 순으로 결정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판단 기준

- 신청 가구의 공고일 전월(前月)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동거인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료 합산 금액 대입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확인

예) 4인 가구 - 아버지(직장가입자), 어머니(직장가입자),
자녀 2인(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

- 가구원에 직장가입자만 있으면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으면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하는 금액 대조

예1) 2인 가구의 A는 전월(前月) 직장보험료가 90,000원, B는 지역보험료 70,000원이면 합산액이 혼합 160,000원으로 2인 혼합 152,775원을 초과하므로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임

예2) 3인 가구의 A는 전월(前月) 직장보험료가 80,000원, B는 직장보험료 60,000원, C는 지역보험료 40,000원이면 합산액이 혼합 180,000원으로 3인 혼합 197,469원 이하이므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임

< (참고) 2026년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 2026년도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참고(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1인 가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
- 다만,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 증빙자료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판단

(소득이 있는 자) 발급가능한 최근 연도분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없는 자) 소득신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 증명'

○ 기초연금 대상자 가구 판단 기준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참고)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단위 : 만원/월)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단독가구	148	169	180	202	213	228	247
부부가구	236.8	270.4	288	323.2	340.8	364.8	395.2